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423 호 2023. 10. 12.(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10호[도시관리계획(도로소3-289호선, 소3-290호선)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11호[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소로2-65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12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13호[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14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15호[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16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17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18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23호[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24호[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14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307호[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317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325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335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347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명 신규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8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351호[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8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352호[공고]..... 9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353호[공시송달공고]..... 9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li> </ul> </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210호

# 도시관리계획(도로:소3-289호선, 소3-290호선)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고시

우리 구 가대동 31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소3-289호선, 소3-290호선) 결정(신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신설)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신설) 조서 및 사유서

####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289	6	국지 도로	410	40호 광장	소3-290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90	6	국지 도로	327	소3-8	소3-9	일반 도로	-	-

#### 나.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3-289	· 노선 신설 (B=6m, L=410m)	· 현행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3-290	· 노선 신설 (B=6m, L=327m)	· 현행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2. 관련도서 : 게재생략(북구 도시과에 비치)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211호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소로2-65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중산동 1166-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소로2-65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57	5~10	국지 도로	414	청소년 수련시설7	중산동 1166-64	일반 도로		'20. 12. 24. 울(북)고 245호
변경	소로	2	657	6~10	국지 도로	414	청소년 수련시설7	중산동 1166-64	일반 도로		-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657	소로2-657	· 노선 폭원 및 선형 조정 (B=5~10m→6~10m)	· 도로개설사업 계획 변경 반영

2. 관계도면: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212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23-11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나. 명칭 : 도시계획시설(중산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사업

###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23-11번지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결정현황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217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산동 1323-11번지	1,000	'10. 10. 28. 울(북)고 83호

나. 토지조서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단 위	면 적	편입면적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23-11	주차장	m <sup>2</sup>	1,000	1,000	
계					1,000	

다. 건물조서

개 요	주차전용 건축물		합계(m <sup>2</sup> )
	주차장(m <sup>2</sup> )	부대시설(m <sup>2</sup> ) (세차장)	
면 적	352.80	149.40	502.20

라. 시설물조서

층 별	건 물 별 주차장(m <sup>2</sup> )	건 축 면 적		비 고
		부대시설(m <sup>2</sup> ) (세차장)	합계(m <sup>2</sup> )	
지상 1층	352.80	149.40	502.20	
계	352.80	149.40	502.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만기, 정석대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 57, 207호
-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66, 102동 702호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1)

번호	지번 (중산동)	지목	대장 면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부지	계	성 명	주 소
1	1323-11	주차장	1,000	1,000	1,000	박만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 57, 207호
						정석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66, 102동 702호
계			1,000	1,000	1,0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13호

##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울산방송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41		
점용 위치	명촌동 30번지 외 22필지	하천의 명칭	태화강, 동천
점용 내용	2023년 태화강 역사 나들이 행사	점용 면적	57,074㎡
점용 기간	2023. 10. 16. ~ 2023. 10. 25.		

## 하천점용 허가 용지조사

구 분	하천명	소재지(지번)	지 목	면 적(m <sup>2</sup> )	소유자	비 고
국가하천	태화강	명촌동 30	하천	16,015	환경부	
		명촌동 437-39	하천	1,504	울산시 북구	
		명촌동 437-3	전	31,663	환경부	
		명촌동 437-25	임야	382	환경부	
		명촌동 437-12	대지	108	환경부	
		명촌동 437-28	유지	168	울산광역시	
계				49,840		
지방하천	동천	명촌동 794-1	전	470	국토교통부	
		명촌동 782-11	전	14	환경부	
		명촌동 782-12	전	18	환경부	
		명촌동 782-13	전	413	환경부	
		명촌동 782-8	전	447	환경부	
		명촌동 794-11	전	377	환경부	
		명촌동 794-10	하천	579	환경부	
		명촌동 782-2	전	2,296	국토교통부	
		명촌동 794-13	전	546	환경부	
		명촌동 794-28	전	704	국토교통부	
		명촌동 794-22	전	734	환경부	
		명촌동 794-30	전	54	환경부	
		명촌동 794-23	전	78	환경부	
		명촌동 794-31	전	56	환경부	
		명촌동 794-24	하천	444	환경부	
		명촌동 794-12	전	3	환경부	
		명촌동 794-29	전	1	환경부	
계				7,234		
총 계				57,074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14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위용복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로 48, 106동 402호(U스타시티일동미라주 1단지)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공연	점용 면적	○ 33.0㎡
점용 기간	2023. 10. 8. (일) 14:00 ~ 19: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15호

##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산단개발과)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어물동 1240-140, 1240-54, 287-3, 1246-12번지	하천의 명칭	어물천, 운곡천
점용 내용	울산미포국가산단(주전동~어물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점용 면적	483㎡
점용 기간	2023. 10. 11. ~ 영구점용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16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손병조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10길 22, 101동 1101호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버스킹 공연	점용 면적	○ 33.0㎡
점용 기간	2023. 10. 19. (목) 12:00 ~ 18: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1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10. 11.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매곡동 산113-1번지 외 1필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244m<sup>2</sup>
  - 나. 기 간 : 2023. 10. 11. ~ 2028.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허완\*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18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이준철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로 309-20, 101동 208호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버스킹 공연	점용 면적	○ 33.0㎡
점용 기간	2023. 10. 21. (토) 15:00 ~ 18: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23호

##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도시과)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효문동 216-1번지 외 14필지	하천의 명칭	연암천
점용 내용	연암천 친수공간 조성공사 (산책로 조성을 위한 바닥 재포장 및 난간설치 등)	점용 면적	1,501㎡
점용 기간	2023. 10. 12. ~ 영구점용		

## 하천점용 허가 용지조서

구 분	하천명	소재지(지번)	지 목	면 적(m <sup>2</sup> )	소유자	비 고
지방하천	연암천	효문동 216-1	제방	31	환경부	
		효문동 216-2	제방	213	환경부	
		효문동 218-1	제방	475	환경부	
		효문동 219-1	제방	126	환경부	
		효문동 219-2	제방	46	환경부	
		효문동 219-4	제방	15	환경부	
		효문동 220-1	제방	69	환경부	
		효문동 220-2	제방	1	환경부	
		효문동 227-1	제방	61	환경부	
		효문동 227-2	제방	16	환경부	
		효문동 228-1	제방	3	환경부	
		효문동 228-3	제방	29	환경부	
		효문동 228-7	제방	17	환경부	
		효문동 963	제방	2	국토교통부	
		효문동 963-10	제방	397	환경부	
계				1,50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24호

##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제일일보(주) 대표이사 임채일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0 지암빌딩 9층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82-2번지 외 10필지	하천의 명칭	동천
점용 내용	억새밭 걷기 행사장 설치(무대, 천막설치 등)	점용 면적	4,242㎡
점용 기간	2023. 10. 13. ~ 2023. 10. 14.		

**하천점용 허가 용지조서**

구 분	하천명	소재지(지번)	지 목	면 적(m <sup>2</sup> )	소유자	비 고
지방하천	동천	명촌동 782-2	전	4,242	국토교통부	
		명촌동 782-8	전		환경부	
		명촌동 782-12	전		환경부	
		명촌동 782-13	전		환경부	
		명촌동 791-2	제방		울산광역시	
		명촌동 794-1	하천		국토교통부	
		명촌동 794-10	전		환경부	
		명촌동 794-11	전		환경부	
		명촌동 794-13	전		환경부	
		명촌동 794-22	전		환경부	
		명촌동 794-28	전		건설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307호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전자우편 주소 : dongyun87@korea.kr
2. 접수기간 : 2023. 11. 12.(일) ~ 2024. 2. 10.(토)

※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317호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38)사업
  - 나. 명 칭: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3. 사업규모
  - 가. 면적 : 84,169㎡
  - 나. 규모 : 축구장, 주차장, 관리동 및 화장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기 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2023년 10월 27일까지)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052-241-7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2

중 산 스포 츠 타 운 조 성 공 사  
편 입 용 지 조 서

3

4

5

6

7

8

2023. 10.

9

10

11

12

13

14



울산광역시 북구

15

총괄 집계표

1										
2	구분								계	비고
3			구	답	도	임	전	제		
4	계	필지							14	
5		면적							84,169	
6	구분	국유지	필지			1			1	
7			면적			191			191	
8		사유지	필지			3			3	
9			면적			30,978			30,978	
10		공유지	필지	1		9			10	
11	면적		727		52,273			53,000		
12										
13										
14										
15										
16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17			면적/수	%	면적/수	%	면적/수	%		
18	전체사업면적	84,169	191	0.23	53,000	62.97	30,978	36.80		
19	필지수(비율)	14	1	7.14	10	71.43	3	21.43		
20			100,000							
21			100,000							
22										
23										
24										
25										
26										
2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북구 중산동) (전체 용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장물	비 고
		지번	지부	지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주 소	성명	주 수	성명	권리내용	분묘(기)	
1	북구	201-2	답	727	727	-	북구(울산광역시)					공
2	중산동	산99-1	임	1,283	1,283	남구 대공원로	이00 외 2인					사
3		산124-6	임	10,091	10,091	-	북구(울산광역시)					공
4		산125-3	임	4,160	4,160	-	북구(울산광역시)				분묘 1기	공
5		산126	임	9,223	9,223	-	북구(울산광역시)					공
6		산127	임	3,541	3,541	-	북구(울산광역시)					공
7		산127-23	임	7,194	7,194	-	북구(울산광역시)					공
8		산127-24	임	4,592	4,592	-	북구(울산광역시)					공
9		산127-25	임	3,579	3,579	-	북구(울산광역시)					공
10		산127-9	임	3,607	3,607	-	북구(울산광역시)					공
11		산132-13	임	6,286	6,286	-	북구(울산광역시)					공
12		산132-14	임	191	191	-	울산광역시					국
13		산132-15	임	18,868	18,868	부산시 금정구	최00					사
14		산132-16	임	10,827	10,827	부산시 금정구	최00				수목1식	사
합	계			84,169	84,169							
					14필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325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 “감리자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10. 12.(목) ~ 2023. 10. 19.(목)(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울산 북구 신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주)위드컴퍼니 대표자 윤 명 관 ☎ 052)271-8044

나. 설계자 : (주)지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 영 ☎ 070-4848-2727

다. 시 공 자 : (주)유탑건설 대표자 김 중 흥 ☎ 062)530-8700

라.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94-1
- 대지면적 : 11,063.7m<sup>2</sup>
- 연 면 적 : 39,179.97m<sup>2</sup>
- 규 모 : 공동주택(지하2층~지상20층) 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230세대
- 공사기간 : 2024. 1. 1. ~ 2026. 8. 31(32개월)
- 사업승인일 : 2022. 11. 25.(사업계획승인 신청일: '22. 9. 7.)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 133,221,149천원
- 대 지 비 : 35,335,000천원
- 총공사비 : 65,185,615천원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56,526,336천원(일반관리비+이윤포함)
  - 타법 감리대상공사비 : 8,659,279천원(일반관리비+이윤포함)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자료' 파일 참조

바.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1,346,552,512원**  
(건축공사비의 2.3821% 적용)
- ※ 기초금액 : **1,306,155,936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 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항 목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전체 공정																																	2024.01.01~ 2026.08.31 (32개월)																	
건축 공사																																	2024.01.01~ 2026.08.31 (32개월)																	
구조체 공사																																																		2024.06.01~ 2025.12.31 (19개월)
토목 공사																																														2024.01.01~ 2024.08.31 2025.11.01~ 2026.08.31 (18개월)				
기계 설비 공사																																																		2024.05.01~ 2026.08.31 (28개월)
전기/ 통신																																																		2024.05.01~ 2026.08.31 (28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일시 : **2023. 10. 20.(금) 10:00 ~ 2023. 10. 24.(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 10. 24.(화)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5호, 2023. 2. 28.) 제10조에 따라 결정함

**마. 유의사항**

- ※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 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개찰일 다음날 게시하고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3. 10. 25.(수) ~ 2023. 10. 27.(금)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1층)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6.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3. 10. 30.(월) ~ 2023. 11. 1.(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1층)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① 감리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방법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유선 문의 및 열람 등은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방법

감리자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

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 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①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소명 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③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다. 비상주감리원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 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 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가점대상임.

### 사.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에 관한 사항 :

해당 주택건설사업(230세대)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 8.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 1~3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 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5호 2023.02.2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 ④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 ⑤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⑥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9. 재무상태 평가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 10.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1) 사업주체 "(주)위드컴퍼니"는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
- 2) 시공자 "(주)유탕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결과)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및 서약서[별첨1](인감 날인)

②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① ~ ⑯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5호 2023.02.2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①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포함)

② 재무상태 건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③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④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⑤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 업체에 한함.

⑥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⑦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 ⑧ 업무중첩도 관련 : 총괄·분야별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 현장과 당해 공사 현장의 해당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 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⑨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 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 건수.(계획공정 만료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 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 시점을 말함)
- ⑩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⑪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 ⑫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다. 유의사항

- ①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②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③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 토목, 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 처리함.
- ④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⑤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 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 계산 : 해당 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 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 서류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⑥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 하여야 함.
- ⑦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 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우리 구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 함.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 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응모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함.

-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신규감리원, 비평가대상감리원 및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②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평가대상분야별 감리원 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평가비상주감리원, 신규감리원 제외)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건축분야 배치.
-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감리분야 구분 없이 1명은 부분 배치 가능함.
- ③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총괄·분야)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단, 허가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은 건축분야에 최소 1인 이상 배치해야만 하며, 나머지는 감리분야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하나, 건축분야 배치를 적극 권장함.
- ④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② 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 ⑤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 하여 환산비를 정한다.

**사. 중복배치 여부 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함.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제외함. 단,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 분야, 참여 분야와 담당 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 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 ②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단, 전체공사 중 순수 건설공사부문의 감리비만을 인정함(전기, 소방, 통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비는 제외)], 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 중인 실적 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

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함.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 실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등)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함.
-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하. 응모서류(신청서 제출 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 평가는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함.
-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105호 2023.02.28.]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름.
- 너.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참여하고자하는 자가 10개 초과 중복 배치되면 실격 처리 됨.
-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 불가)
-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지정을 취소하고 감리 질서 문란 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 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감리자 지정기준 제14조6항에 따라 조치함.
- 머. 응모서류 등록접수 시에는 기재 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 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감리자 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버.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구 홈페이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입  
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  
자모집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  
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감리자지정 기준이 상이할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  
시 제2023-105호 2023.02.28.]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 기타 의문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지정신청 1식. 끝.

분 야	접수번호
건 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지정신청

(울산 북구 신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3. . .

[감리회사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알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층, 동, 세대	㎡	준공일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사실확 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점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충족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총괄 감리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면접(발표)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감 리 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 주감 리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분야별 세부평가(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재무상태 건 실 도	5	<p>○○ 평가 및 산정방법</p> <p>○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li> <li>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 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 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li> <li>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li> <li>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li> </ol>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 <th>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th> <th>기업 신용평가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5.0</td> <td>AAA</td> <td>-</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A+, AA°, AA-</td> <td>A1</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td> <td>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하는 등급)</td> </tr> <tr> <td>A°</td> <td>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하는 등급)</td> </tr> <tr> <td>A-</td> <td>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4.2</td> <td>BBB+</td> <td>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B°</td> <td>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B-</td> <td>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3.4</td> <td>BB+, BB°</td> <td>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td> <td>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 B°, B-</td> <td>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2.6</td> <td>CCC+ 이하</td> <td>C 이하</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 하에 준하는 등급)</td> </tr> </tbody> </table>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하는 등급)	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 하에 준하는 등급)	○	○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하는 등급)																																											
		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 하에 준하는 등급)																																													
산출근거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2)감리업 무 수 행 실 적	12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li> <li>-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 기간 일수) &lt;소수점이하 절사&gt;</li> <li>-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li> <li>-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li> <li>○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li> <li>○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li> </ul> </li> <li>- 배점기준 (단위 : 억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공사규모</th> <th colspan="5">기준 및 배점</th> </tr> </thead> <tbody> <tr> <td>1,500세대 이상</td> <td>350이상</td> <td>350미만 250이상</td> <td>250미만 150이상</td> <td>150미만 70이상</td> <td>70미만</td> </tr> <tr> <td>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td> <td>250이상</td> <td>250미만 150이상</td> <td>150미만 70이상</td> <td>70미만 50이상</td> <td>50미만</td> </tr> <tr> <td>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td> <td>150이상</td> <td>150미만 70이상</td> <td>70미만 50이상</td> <td>50미만 30이상</td> <td>30미만</td> </tr> <tr> <td>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td> <td>70이상</td> <td>70미만 50이상</td> <td>5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10이상</td> <td>10미만</td> </tr> <tr> <td>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 <td>50이상</td> <td>5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300세대 미만</td> <td>10이상</td> <td>10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배 점</td>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body> </table>	공사규모	기준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공사규모	기준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산출근거		억 원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2																																																		
(3) 행정 제재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및 산정방법</li> <li>-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li> <li>○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li> <li>•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li> <li>•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li> </ul> </li> <li>○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li> </ul> </li> <li>○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li> </ul> </li> </ul> </li> </ul>																																																		
		산출근거																																																		

항 목	배 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p>○ 평가 및 산정방법</p> <p>○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권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 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li> <li>※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li> <li>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li> <li>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3년 미만</td> <td>3년 이상 6년 미만</td> <td>6년 이상 10년 미만</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li> </ul> <p>○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li> <li>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미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li> <li>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li> <li>배점기준</li> </ul>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3% 이상</td> <td>3.0%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 2.0% 이상</td> <td>2.0% 미만 1.5% 이상</td> <td>1.5% 미만 1.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2.5</td> <td>2.0</td> <td>1.5</td> <td>1.0</td> <td>0.5</td> </tr> </table> <p>○ - 교육훈련(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lt;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gt;</li> <li>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li> <li>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li> </ul>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산출근거		<p>-건설기술개발실적 :</p> <p>-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p> <p>(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5 =</p> <p>-교육훈련</p> <p>(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3 =</p>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5)신규감리원배치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000세대 미만</th> <th>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th> <th>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h> <th>2,000세대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0명</td> <td>2.0점</td> <td>0점</td> <td>0점</td> <td>0점</td> </tr> <tr> <td>1명</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d>0점</td> </tr> <tr> <td>2명</td> <td>2.0점</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r> <tr> <td>3명</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d>1.5점</td> </tr> <tr> <td>4명이상</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r> </tbody> </table>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산출근거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4																														
(6)교체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교체빈도율(%)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비율</th> <th>5%미만</th> <th>5%이상 10%미만</th> <th>10%이상 15%미만</th> <th>15%이상 20%미만</th> <th>2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7</td> <td>5</td> <td>3</td> <td>1</td> <td>0</td> </tr> </tbody> </table>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배점	7	5	3	1	0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배점	7	5	3	1	0																											
산출근거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7)가점 소계	(3)																			
7-1.감리원 추가배치, 총괄 감리원 등급 상향	(1)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u>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u></li> <li>◦ 평가방법</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th> <th>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h> <th>2,000세대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명</td> <td>1.0점</td> <td>0.7점</td> <td>0.5점</td> </tr> <tr> <td>2명</td> <td>1.0점</td> <td>1.0점</td> <td>0.7점</td> </tr> <tr> <td>3명 이상</td> <td>1.0점</td> <td>1.0점</td> <td>1.0점</td> </tr> </tbody> </table> <p>※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li> </ul>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산출근거																				
7-2.지역 가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li> <li>- 배점기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배점</th> <th>주택건설지역</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td> </tr> </tbody> </table>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산출근거																				
7-3.설계 용역 수행가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li> <li>·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li> </ul> </li> <li>※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li> <li>-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li> <li>·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li> </ul> </li> </ul>																		
산출근거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8)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8-1.감리원 배치계획	(적.부)	<p>○○ 평가방법</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li> <li>·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 「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li> <li>·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li> <li>·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li> <li>·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li> <li>·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 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 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 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ul>		
산출근거		(적 : 적합, 부 : 부적합)		
8-2.업무 중첩도	(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li> <li>-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li> <li>-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li> </ul> <p>※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산출근거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8)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8-3.감리원 추 가 의 배치	(적.부)	<p>○○ 평가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li> <li>·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li> </ul> <p>※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li> <li>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li> </ul>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li> </ul> <p>※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방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td> <td>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d> <td>2,000세대 이상</td> </tr> <tr> <td>추가인원</td> <td>1명</td> <td>2명</td> <td>3명</td> </tr> </table> <p>※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p>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산출근거												

나. 감리원

나1. 총괄감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7	◦ 가정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1) 등 급	6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li> <li>-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li> <li>·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li> </ul> </li> </ul>																	
산출근거																			
(2) 경력 및 실적	18 (15)	<p>○○ 평가 및 산정방법</p> <p>&lt; 기본자격요건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li> </ul> </li> </ul> <p>&lt; 배점기준 적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li> <li>·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li> <li>·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li> </ul> </li> <li>-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li> <li>·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li> <li>·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li> <li>·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li> </ul> </li> </ul> <p>※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배점</td> <td>18 (15)</td> <td>16.5 (13.5)</td> <td>15 (12)</td> <td>13.5 (10.5)</td> </tr> <tr> <td>1천세대 이상</td> <td>12년 이상</td> <td>12년 미만 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td> </tr> <tr> <td>1천세대 미만</td>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td> </tr> </table> <p>※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p>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3)	- 면접(발표)  ·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교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평가등급</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r> <tr> <td>배점</td> <td>3</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able>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산출근거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3	○ 평가 및 산정방법  ○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절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00 미만</td> <td>500 이상 1,500 미만</td> <td>1500 이상 2,500 미만</td> <td>2,500 이상</td> </tr> <tr> <td>쪽 수</td> <td>15쪽 이상</td> <td>20쪽 이상</td> <td>25쪽 이상</td> <td>30쪽 이상</td> </tr> <tr> <td>부 문 (내 용)</td> <td colspan="4">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td> </tr> </table>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구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구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산출근거																			
(4)자격가점	(0.2)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5)감점	(-3.0)	<p>○○ 평가 및 산정방법</p> <p>-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p>		
5-1. 행정제재 감점	(-2)	<p>·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 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p> <p>·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p> <p>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p> <p>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p> <p>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p> <p>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p>		
산출근거				
5-2. 교체빈도 감점	(-1)	<p>○○ 평가 및 산정방법</p> <p>-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p> <p>※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p>		
산출근거				

나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정하며, 가점·감점은 배정기준으로 평정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 로 산정(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9	·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1) 등 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정기준(2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공사규모</th> <th colspan="3">점 수</th> </tr> <tr> <th>특급건설기술자</th> <th>고급건설기술자</th> <th>중급건설기술자</th> </tr> </thead> <tbody> <tr> <td>1천세대 이상</td> <td>2</td> <td>1.8</td> <td>1.6</td> </tr> <tr> <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 <td colspan="2">고급건설기술자 이상</td> <td>중급건설기술자</td> </tr> <tr> <td colspan="2">2</td> <td>1.8</td> </tr> <tr> <td rowspan="2">300세대 미만</td> <td colspan="3">중급건설기술자 이상</td> </tr> <tr> <td colspan="3">2</td> </tr> </tbody> </table>	공사규모	점 수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천세대 이상	2	1.8	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공사규모	점 수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천세대 이상	2	1.8	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산출근거		- 건축 : 등급																											
		- 토목 : 등급																											
		- 설비 : 등급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2)경력 및 실적	7	<p>○○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p> <p>&lt; 기본자격요건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li> <li>※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li> <li>·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li> <li>·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li> </ul> </li> <li>- 토목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li> <li>·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li> <li>·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li> <li>·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li> </ul> </li> </ul>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 설비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li> <li>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li> <li>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li> <li>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li> </ul> -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li> <li>「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li> <li>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li> <li>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li> </ul>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공사규모</th> <th colspan="4">점 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천세대 이상</td>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td> </tr> <tr> <td>7</td> <td>6.3</td> <td>5.6</td> <td>4.9</td> </tr> <tr> <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 <td>6년 이상</td> <td>6년 미만 2년 이상</td> <td colspan="2">2년 미만</td> </tr> <tr> <td>7</td> <td>6.3</td> <td colspan="2">5.6</td> </tr> <tr> <td rowspan="2">300세대 미만</td> <td colspan="2">2년 이상</td> <td colspan="2">2년 미만</td> </tr> <tr> <td colspan="2">7</td> <td colspan="2">6.3</td> </tr> </tbody> </table>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산출근거		- 건축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토목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설비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3)자격가점	(0.1)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산출근거		- 설비 : 자격사항			
(4)행정제재 감점	(-1)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건 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합산벌점 : (점)		
		토 목	업무정지기간 등 : (월) 합산벌점 : (점)		
산출근거		설 비	업무정지기간 등 : (월) 합산벌점 : (점)		
(5)교체빈도 감점	(-0.5)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건축 :			
		- 토목 :			
산출근거		- 설비 :			

나3. 비상주 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1) 등 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산출근거		등급 :										
(2) 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의외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의외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경 령</td> <td>10년이상</td> <td>10년미만 5년이상</td> <td>5년 미만</td> </tr> <tr> <td>배 점</td> <td>4점</td> <td>2.5점</td> <td>1점</td> </tr> </table>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경 령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4점	2.5점	1점		
경 령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4점	2.5점	1점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3)행정제재 감점	(-1)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산출근거		업무정지등 기간	(월)	
		합산벌점	(점)	
(4)교체빈도 감점	(-1)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교체건수 : 상주( 건) , 비상주 ( 건)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비고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16>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사 업 내 용	공 사 명			사업승인일	
		규 모	층,	동,	착공(예정)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		※ 공동도급인 경우					
비 율	(%)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첨 1]

##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사업명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0”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별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총 괄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 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 및 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경 력 사 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 고
	사 업 명	기 간				
신 규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별첨 5]

※ 아래 감리원배치계획표는 참고용으로 감리자(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제출하여도 무관함.

(예시)

<감리원 배치 계획 표>

구분	분야	성명	등급	투 입 기 간																																																개월	환산비	인월수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총괄	건축	○○○	특급																																																				
분야별	건축																																																						
	토목																																																						전반기
	설비																																																						후반기
비상주																																																							
신규																																																							
비평가																																																							
추가 배치																																																							
총배치 인월수																																																							

※ 감리대상공사비 :

- 법 정 인·월 수 :                      인·월

- 투 입 인·월 수 :                      인·월 ( 상주:                      /비상주 :                      )

-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                      인·월 (                      %)

[참고자료]

## 전자입찰참가 안내서

### □ 전자입찰 접속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http://www.g2b.go.kr))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좌측) ⇒ 입찰공고(상단)  
→ 물품, 공사, 용역 중 해당 분야 클릭

### ▲ 공고현황 조회

#### ○ 검색방법

- 입찰공고는 2개월간, 입찰(개찰일)은 3개월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검색(가운데 하단)을 눌러 조회
- 기관별 검색 (찾기로 조건 검색 가능)
  - 발주(공고)기관 :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의뢰 받아 집행하는 기관
  - 실수요기관 : 입찰을 의뢰하는 기관
  - ※ 기관 유사어를 넣고 검색하면 조회됨
- 공고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명 중 지명 또는 단어만 입력 후 검색하면 용이
- 공고게시일자 및 개찰일자
  - 공고게시일자 : 공고 게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 개찰일자 : 개찰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 참조번호 및 입찰공고번호
  - 내용을 아는 경우는 선택적으로 검색 가능
  - ※ 입찰일자를 아는 경우는 개찰일자를 조정하여 검색

#### ○ 공고서 보는 방법(검색 후 과정)

- 우측에 『투찰』 부분이 보이는 것은 전자입찰이며, 그 외는 수기입찰임
- 공고내용을 보려면 「공고번호-차수」의 공고번호를 클릭
  - 공고일반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참여 대상인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고서, 규격서등을 참고하고, 해당 공고내용에 관한 질문사항을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마감일시
  -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입찰일 전일까지 되어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므로 미등록시에는 결과적으로 마감시간이 전일로 결정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고서의 『협정』 클릭
  - 대표업체코드 검색 클릭하여 사업자번호로 검색하여 선택
  - 입찰기관에서 공고 시 공동 또는 분담방식 중 한가지인 경우는 자동 반영되며, 두가지 경우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공동수급체 및 구성원」의 대표업체구분은 자동 선택되며, 공동이행방

식의 경우는 출자비율을 입력하시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는 공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방법

-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 조달업체업무(우측상단) ⇒ 물품·시설·용역⇒ 투찰관리(좌측)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좌측)에서 해당공고번호 입력하여 맞으면 승인처리

▲ 사전 규격(수요기관 요청서 공개)

- 입찰공고가 되기 이전에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전 규격이 공고가 되므로 규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는 규격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 조달청 입찰공고시 입찰일(5~3일전)에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발표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에 참여바라며, 타 기관 공고시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조달청 공고의 입찰투찰 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만 됨

▲ 개찰결과 및 최종낙찰자조회

- 개찰결과 : 입찰 후 개찰된 결과를 보여줌
- 최종낙찰자 조회 : 낙찰된 업체를 보여줌

□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주요사항 안내

▲ e-고객센터(우측상단)

- 법령정보 : 회계예규 및 조달청훈령 등 입찰에 필요한 규정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전자입찰에 필요정보
  - 기관별 공지사항 : 각 기관에서 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 자료실
  - 업무별자료실 : 업무에 관련된 사항
  - 일반자료실 : 일반적인 주요 질문사항 등록
- FAQ, Q&A : 시스템관련 각종 질문사항 및 업체필요 정보

▲ 이용가이드(우측상단)

- 이용자 매뉴얼
  - 입찰에 필요한 각종 자료

**각종 전자입찰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국번없이 1588- 0800**

[참고자료]

##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 <1단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요금) 발급 [업체 직접 신청 및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하여 연락 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함>

- ☞ 한국 전자 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 ☞ 한국 정보 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 ☞ 코스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566-2119

#### \* 「지문보안토큰」 구매 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하므로, <1단계> 범용 인증서를 구매할 때 미리 지문보안토큰까지 동시에 구매(대금결제)하시기 바라며, 대금결제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하여 우선 보관  
(\*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은 아래 <3단계> 등록승인 완료된 후 조달청에 방문하여 <4단계> 지문등록 시에 제출해야 함)

### <2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업체 → 조달청 송신]→

-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해당 신청항목을 입력한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시행문 내용참조)를 해당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조물품' 등록을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확인 후 신청)

### <3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조달청(고객지원센터)] (개인은 1인1사만 등록가능)

- 등록신청한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함  
\* 승인여부 확인 메뉴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 <4단계> 지문등록 [업체 → 조달청(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 등록승인 여부를 확인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하여 승인완료되었으면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함
- 대표자(또는 등록된 입찰대리인) 지문등록 방문 시 필수 지참서류 (①, ②)  
①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② 신분증 (각자 필히 지참)

\* 단, 미등록 입찰대리인의 경우 (나라장터에 먼저 입찰대리인 등록 후 지문등록 가능)

\* 미등록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내용참조

### <5단계> 인증서 등록 [업체 직접 등록]

- [나라장터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 ♣ 5단계까지 완료되면 모든 업체등록 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

나라장터 입력 등 이용방법 문의는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참고자료2】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	40	60	$60 - 5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45	84.95%
500세대 미만	50	50	$5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1,000세대 미만	60	40	$40 - 2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25	80.45%
1,000세대 이상	70	30	$30 -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

### 울산 신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개요

● 사업주체	(주)위드컴퍼니 대표이사 윤명관 052)271-8044	
● 설계자	(주)지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영 052)070-4848-2727	
● 시공자	(주)유탑건설 대표이사 김종흥 062)530-8700	
● 사업개요		
○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94-1번지 일원	
○ 대지면적	11,063.7000 m <sup>2</sup>	
○ 연면적	39,179.9400 m <sup>2</sup>	
○ 사업규모	공동주택(지하 2층, 지상 20층) 3개동, 2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사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6년 08월 31일 (32개월)	
○ 사업계획 신청일/승인일	2022년 11월 25일	
● 사업비		
○ 총사업비	133,221,149	천원
○ 대지비	35,335,000	천원
○ 총공사비	65,185,615	천원(부가세별도)
- 감리대상 건축 공사비	56,526,336	천원(일반관리비+이윤포함)
- 타법 감리대상 공사비	8,659,279	천원(일반관리비+이윤포함)

[별지 제1호 서식]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 공사명 : 울산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타법감비	감리제외
총 공 사 비	순 공 사 비	토목공사	3,722,094	3,722,094	
		건축공사	43,980,721	43,980,721	
		설비공사	5,247,438	5,247,438	
		전기공사	3,422,244		3,422,244
		정보통신공사	1,245,045		1,245,045
		소방설비공사	3,239,725		3,239,725
	일반관리비	676,912	559,266	117,646	
	이 윤	3,651,436	3,016,817	634,619	
소 계		<b>65,185,615</b>	<b>56,526,336</b>	<b>8,659,279</b>	
간 접 비	설 계 비	952,000			952,000
	감 리 비	1,557,936			1,557,936
	일반분양시설경비	5,352,412			5,352,412
	분담금 및 부담금	2,562,909			2,562,909
	기타 사업비성 경비	22,275,277			22,275,277
소 계		<b>32,700,534</b>	-	-	<b>32,700,534</b>
대 지 비		35,335,000			35,335,000
<b>총 사업비 계</b>		<b>133,221,149</b>	<b>56,526,336</b>	<b>8,659,279</b>	<b>68,035,534</b>

← 총공사비 : 부가세 제외 금액

註 1. 순공사비란 :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2.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에 따름.

3. 부가가치 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4. 간접비란 : 사업비 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세부비목은 다음과 같음.

- 일반분양시설 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학교용지확보부담금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 교량, 환경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 보존등기비 및 입주관리비, 분양, 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등 기타 사업성 경비
- 대지비 : 대지구입비, 대지구입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별지 제2호 서식]								
■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65,185,615,000	
							(금액단위 : 천원)	
구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타법감비	비 고	65,185,615	
순공사비	토목 (13개공종)	토공사	1,101,636	1,101,636				
		흙막이공사	482,373	482,373				
		비탈면보호공사	136,889	136,889				
		옹벽공사	319,409	319,409				
		석축공사	162,964	162,964				
		우오수공사	195,556	195,556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39,111	39,111				
		도로포장공사	176,001	176,001				
		조경공사	990,821	990,821				
		부대시설공사	117,334	117,334				
		<b>소계 1</b>	<b>3,722,094</b>	<b>3,722,094</b>	-			
	건축 (23개공종)	공동기설공사	1,029,932	1,029,932				
		가시설블공사	1,003,858	1,003,858				
		지정및기초공사	202,075	202,075				
		철골공사	123,852	123,852				
		철근콘크리트공사	20,689,914	20,689,914				
		윤접공사	26,074	26,074				
		조적공사	1,212,452	1,212,452				
		미장공사	1,636,158	1,636,158				
		단열공사	312,890	312,890				
		방수/방습공사	873,487	873,487				
		목공사	475,854	475,854				
		가구공사	2,640,017	2,640,017				
		금속공사	1,147,266	1,147,266				
		지붕 및 홀통공사	110,815	110,815				
		창호공사	2,952,908	2,952,908				
		유리공사	710,523	710,523				
타일공사		1,538,380	1,538,380					
돌공사	1,531,861	1,531,861						
도장공사	723,560	723,560						
도배공사	1,160,303	1,160,303						
수장공사	2,027,272	2,027,272						
주방용구공사	332,446	332,446						
잡공사	1,518,824	1,518,824						
	<b>소계 2</b>	<b>43,980,721</b>	<b>43,980,721</b>	-				
순공사비	기계설비 (9개공종)	급수설비공사	534,522	534,522				
		급탕설비공사	508,447	508,447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488,892	488,892				
		위생기구공사	456,299	456,299				
		슬관기기계공사	840,894	840,894				
		난방설비공사	1,134,229	1,134,229				
		가스설비공사	299,853	299,853				
		자동제어설비공사	97,778	97,778				
		특수설비공사	886,524	886,524				
		<b>소계 3</b>	<b>5,247,438</b>	<b>5,247,438</b>	-			
		전기(15개 공사)	3,422,244		3,422,244			
		정보통신(13개 공사)	1,245,045		1,245,045			
		소방설비(2개 공사)	3,239,725		3,239,725			
	<b>합 계</b>	<b>60,857,267</b>	<b>52,950,253</b>	<b>7,907,014</b>				
	일반관리비	676,912	559,266	117,646				
	이윤	3,651,436	3,016,817	634,619		3,651,436		
	<b>총 공사비</b>	<b>65,185,615</b>	<b>56,526,336</b>	<b>8,659,279</b>		← 총공사비 : 부가세 제외 금액		

### [예정공정표]- 감리원 배치계획

▣ 공 사 명 : 울산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 착 공 예정일 : 2024. 01 . 01

▣ 공 사 기 간 : 2024. 01. 01 ~2026. 08. 31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전체공정																																	2024.01.01~ 2026.08.31 (32개월)
건축공사																																	2024.01.01~ 2026.08.31 (32개월)
구조체공사																																	2024.06.01~ 2025.12.31 (19개월)
토목공사																																	2024.01.01~ 2024.08.31 2025.11.01~ 2026.08.31 (18개월)
기계설비공사																																	2024.05.01~ 2026.08.31 (28개월)
전기/통신																																	2024.05.01~ 2026.08.31 (28개월)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335호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 현재 비상설로 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사전심의와 사후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상설화(안 제5조)
-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 수정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6조)
- 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 라. 정책연구용역의 예산편성 전 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3.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5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52-241-7151, 팩스번호 : 052-241-7109

- 전자우편(E-mail) : kyusickim@korea.kr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 업무 부서장, 주관 부서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를 수행”을 “심의·의결을 수행”으로, “심의를 회피”를 “심의·의결을 회피”로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주관부서 담당주사가”를 “총괄부서 정책연구용역 업무 담당이”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예산편성 전 심의)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

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p> <p>1. ~ 5. (생략)</p>	<p>제3조(적용 범위) ----- ----- ----- -----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u>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u></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생략)</p>	<p>제5조(설치 및 기능) ① ----- ----- ----- ----- ----- ----- ----- ----- ----- ----- -----</p> <p>----- 둔다.</p> <p>② ----- ----- ----- ----- ----- ----- ----- ----- ----- ----- -----</p> <p>심의·의결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u>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p>	<p>제6조(구성) ① -----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u> ----- ----- ----- ----- ----- ----- ----- ----- ----- ----- -----</p>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  
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 3.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②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  
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

-----  
-----  
-- 심의·의결-----.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심의·의결을 수행-----  
----- 심  
의·의결을 회피-----.

제8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 총괄부서의 정책  
연구용역 업무 담당이-----.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연구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제15조(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16조(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

⑦ ----- 별지 제2호서식의 -----  
-----  
-----.

제11조의2(예산편성 전 심의)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심의요청) -----  
-----  
별지 제1호서식의 -----  
-----  
-----.

-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진행상황의 점검) ① -----  
-----  
-----  
----- 별지 제3호서식의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결과의 평가) ① -----  
-----  
-----  
----- 별지 제4호서식

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결과의 활용) ① (생략)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결과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5호서식의 -----  
-----.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347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 신규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 및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기 간 : 2023. 10. 10. ~ 2023. 10. 24. (14일간)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관보
3. 공고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 신규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4.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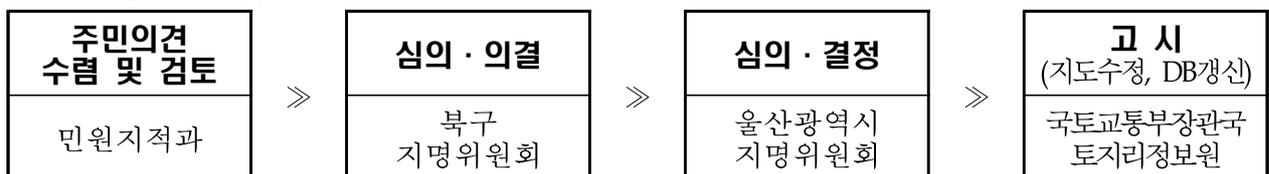
연번	지명(위치)	분류	지명유래	제정근거	비 고
1	상안저수지 (상안동 1173-2)	수리	지형이 상안(象眼)과 같아 하여 상안으로 부른것이 후세에 한자로(常安)으 로 칭하였다 함	상안마을에 1941년대 조 성되었고 지역주민들 사이 에서 통용되어 현칭성이 확보되어 지명 제정고시 필요	신규제정
2	송정저수지 (송정동 1091-1)	수리	동네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다 하여 송정이라 칭하게 되었다 함.	1974년 12월에 준공되 었고 무룡산에서 내려 온 물을 가둬 만든 댐 으로 지역주민 사이에서 통용되어 현칭성이 확보되어 지명 제정고시 필요	신규제정
3	제전항 (구유동 127-13)	교통	구류동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옛날에 딱발이 많이 있었다 하여 저전 또는 제전이라 불리운	제전마을에 있는 소규모 여촌정주항으로 지역주 민들 사이에서 통용되어 현칭성이 확보되어 지명	신규제정

			다 고 함	제정고시 필요	
4	당사항 (당사동 378-2)	교통	마을 입구에 단수목(檀樹木)의 잎이 피면 초가형이 되어 당사동이라 함	당사마을에 있는 지방어항으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통용되어 현칭성이 확보되어 지명 제정고시 필요	신규제정
5	심청골 (염포동 산44-1)	거주	심청골(深淸谷)은 신천골이라는 골짜기를 부르면서 발생하는 자음 접변 현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는 골짜기가 깊고 냇물이 맑아 붙여진 이름이라는 말도 있다.	심청골은 염포동과 양정동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지역주민이 사이에서 통용되어 현칭성이 확보되어 지명 제정고시 필요	신규제정
6	오치골 (양정동 510)	거주	옛 지명사에는 오치골(烏雉谷)로 되어 있다. 정조 때는 이곳을 까치말(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오치골은 옛 기록에 오치골(五雉谷)로 적혀 있기도 하다.	오치골공원이 아래쪽에 있으며, 지역주민 사이에서 통용되어 현칭성이 확보되어 지명 제정고시 필요	신규제정
7	송정들 (화봉동 1145-11)	들	동네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다 하여 송정이라 칭하게 되었다 함.	지역주민 사이에서 통용되어 현칭성이 확보되어 지명 제정고시 필요	신규제정

5. 의견제출

- 가. 제출방법 : 전자우편(sngddrn@korea.kr) 또는 팩스(052-241-7569) **【붙임 1】**
- 나. 제출기한 : 2023. 10. 24.(화)까지
- 다. 제출방법 : 의견제출 서식란에 내용 기재하여 제출  
(제출자 성명, 연락처 기재)

6. 지명 결정 절차



7.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052-241-7283).

붙임 : 지명세부내용 조사표 1부. 끝.

[붙임2]

## 북구 자연지명 정비(신규제정·폐지)에 따른 의견서

성명 및 단체		연락처	일반전화	052-
			휴대전화	
주 소	(법정동만 기재)	동	거주기간	
지명 정비에 대한 의견	대상지명	※ 중복기재 가능		
	동 의		사 유	
	비 동 의			
	기타의견			

북구 자연지명 정비(신규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기타문의 : 북구청 민원지적과 ☎ 241-728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351호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제정이유

-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 안 제5조)
-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6조)
- 업무대행(안 제7조)
- 점검 및 환수(안 제8조)

### 3.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3년 장사업무 안내 지침」 제8편제4장

####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 처

- 1)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 2) 전화번호 : 052)241-7624, 팩스번호 : 052)241-7669
- 3) 전자우편(E-mail) : meandyou33@korea.kr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복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물품비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례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장례 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장례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수수료 없 음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b>공영장례 비용 청구서</b>						
신청인 (대행기관)	업 체 명 (기관단체)	(전화번호: )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장례처리	장례일자				
		안치장소				
청구금액(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p>「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비용청구자(대행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b>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b></p>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 관계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2023년 장사업무안내 지침」

### 제4장(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지원)

#### 가. 기본방향

- 무연고 사망자 등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하나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며,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확보한다.
- 지자체별로 공설장사시설 유무, 관내 장사시설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역할별로 필요한 인력 풀을 구성한다.
-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의 봉안절차 생략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장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고, 기존 노인자원봉사 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나.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다. 수행방식 : 용역업체 및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35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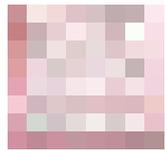
## 공 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등록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인영	비고
1	울산광역시복구 효문동장인(민원사무전용)	인증기교체 재등록	2023. 10. 12.		

## 2. 폐기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폐기일자	인영	비고
1	울산광역시복구 효문동장인(민원사무전용)	인증기교체 재등록	2023. 10. 1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353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26. (15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20-12 외 1필지	김*자	무단신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673,000원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